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86
----------	-------

발의연월일 : 2019. 1. 8.

발의자 : 전희경 · 강효상 · 김성찬
김재원 · 김종석 · 김학용
김현아 · 박맹우 · 신상진
윤상직 · 윤재옥 · 추경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신규채용 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 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법」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 현행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으나,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법률의 의미가 없어짐.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법률 제 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